#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5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어기구 • 박지원 • 강선우

이개호・황 희・박 정

허종식 · 소병훈 · 박수현

문금주 · 정준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절차와 방법을 시 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19조제3항 및 안 제119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를 "해양환경의"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를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② (생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u>해양환경의</u> 보전·관리 및 해	
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	
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
	<u>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u>
	<u>할 수 있다</u> .
<u>&lt;신 설&gt;</u>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
	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